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1*****

■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단위:원)

	상 호		보험종류				
종 류	사업자번호	2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1	납입금액 계
	종피보험자	ŀ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메리츠화재해상보	험주식회시	l New라이프케어 0	1091			
보장성	116-81-03	3***	6R216***	•	800515-1****	이계중	719,040
	삼성화재해상보	험 (주)	애니카 다이렉트 용)	(개인			
보장성	202-81-45	_ _ _ _	11434562780)***	800515-1****	이계중	470,570
	삼성화재해상보	험 (주)	무배당 삼성화재 보험 엄	자녀			
보장성	202-81-45	_ _ _ _	51120618650)***	120412-3*****	이승유	471,480
	840730-2****	정미정					
	인별합계금액		1,661,0		1,661,09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요건 제한 있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1*****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4-09-05*	타**	일반	28,000
5-13-42*	도**	일반	11,100
5-96-07*	가***	일반	4,000
6-11-44*	봄****	일반	81,300
6-90-32*	노**	일반	87,000
9-14-78*	0 ***	일반	270,700
9-91-34*	순***	일반	7,900
6-82-02*	가********	일반	165,300
2-05-57*	온****	일반	56,100
8-90-56*	참****	일반	10,100
0-40-89*	개**	일반	6,6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728,1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728,1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장순	480912-2*****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9-07-98*	⊡⊦****	일반	92,800
9-08-38*	0 **	일반	61,400
9-28-27*	0 **	일반	700
9-82-06*	의*******	일반	224,140
9-90-92*	从*****	일반	12,000
9-91-34*	순***	일반	38,500
6-82-02*	フト********	일반	5,561,340
0-40-89*	개**	일반	32,0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6,022,88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6,022,88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승유	120412-3*****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9-07-98*	ō⊦****	일반	4,200
9-08-15*	가***	일반	10,600
9-08-86*	JI**	일반	3,200
9-28-28*	동**	일반	2,060
9-82-06*	○ *******	일반	5,800
9-90-58*	연*****	일반	3,800
9-90-93*	[****	일반	6,200
9-91-34*	순****	일반	132,200
9-91-38*	삼*****	일반	17,700
9-91-53*	연*****	일반	21,000
9-96-09*	0 ****	일반	5,200
0-40-89*	개**	일반	45,100
7-02-14*	에****	일반	3,440
3-06-25*	밝**	일반	12,300
2-29-30*	수*	일반	3,2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환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승유	120412-3*****

■ 의료비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2-91-85*	토***	일반	3,8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279,8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279,8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 사내근로복지기금,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
- 2. 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 본인·장애인·만65세 이상(한도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1*****

■ 2013년도 사용액 계

일반	19,089,245	!-!	
전통시장	671,920	인별합계 금액	20,691,865
대중교통	930,700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04-86-23***	하나카드(구하나SK카드)	일반	4,163,670
104-86-56***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일반	0
104-86-56***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대중교통	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1*****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4,644,382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대중교통	174,300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1*****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0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10,696,177
213-86-15***	현대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117,08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1*****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13-86-15	***	현대카드주식회사	대중교통	180,850
	일반			6,415,454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대중교통	221,200		221,200
	일반			13,088,775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117,080
L 31 71 8 1	대중교통			133,950
인별합계금	글액			19,976,459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장순	480912-2*****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상 호 종류 공제대성		공제대상금액
101-86-61	***	(주) KB국민카드 대중교통		7,650
213-86-15	·)***	현대카드주식회사	일반	208,490
	일반			10,850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EM 7187	대중교통	2,300		
	일반			197,64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Z	대중교통			5,350
인별합계금	글액			216,14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1*****	

■ 2013년도 사용액 계

일반	457,320		
전통시장	61,000	인별합계 금액	518,320
대중교통	0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04-86-56***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일반	656,541
104-86-56***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전통시장	0
129-86-38***	(주) 이비카드	대중교통	280,000

- 1.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1*****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202-81-45	-)***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68,000
	일반			436,440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대중교통			48,550
	일반			288,101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대중교통			231,450
인별합계금	금액			1,004,541

- 1.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장순	480912-2*****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
101-86-61	***	(주) KB국민카드	일반	553,730
	일반			0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일반			553,73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대중교통			0
인별합계금	글액			553,730

- 1.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1*****

■ 2013년도 사용액 계

일반	3,166,565		
전통시장	43,000	인별합계 금액	3,255,765
대중교통	46,200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20070	5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62,970	137,510	315,880	246,920	
현금영수증	일반	134,110	265,520	195,270	254,250	1,942,170
		78,260	3,000	118,480	30,00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1*****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20070	δ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0	0	0	0	0
		0	0	0	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 사용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1****

■ 2014년도 사용내역 (단위:원)

			월별 공제	대상금액		
현금영수증	종류	1월	2월	3월	4월	공제대상금액
20070	δ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46,200	46,200	0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0	0	0	0	92,400
		0	0	0	0	
	일반					1,262,910
인별 상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대중교통					92,400
	일반					679,260
인별 하반기 전체 사용액	전통시장					0
-CM M 6 7	대중교통					0
인별합계금	액					2,034,570

- 1.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입양자의 사용금액에 한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다만, 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금액이 '13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의 '14년 하반기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이 '13년 연간 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은 40%
- 2.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각각 추가 100만원)
- ※ 공제한도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





2014년 귀속 소득공제증명서류: 기본내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차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이계중	800515-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내역

(단위:원)

취급기관 (사업자번호)	대출종류 (상품명)	최초차입일 최종상환예정일	상환 기간	주택 취득일	저당권 설정일	연간합계액	소득공제 대상액
		차입금	고정금리 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 원금상환액		
한국주택금융공사 (104-81-86***)	기존주택구입 (U-보금자리 론)	2013-02-19 2028-02-19	15년	2010-01-20	2013-02-19	3,603,498	3,603,498
		124,000,000	124,000,000	0	0		

- 1.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13년 이전 차입분 3억원)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2.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월세액 공제와 합하여 차입연도, 상환기관 및 상환종류 등에 따라 연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구분	2003년 이전 차입분	2011년 이전 차입분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상환기간 종류	10년~15년 미만	15~30년 미만	3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상환대출	기타대출
한도액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2014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기본(지출처별)내역[기부금]

■ 기부자 인적사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장순	480912-2****

■ 기부금 지출내역 (단위:원)

사업자번호	단 체 명	기부유형	기부금액 계
201-82-00972	(재)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종교단체기부금	130,000
201-82-06995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법정기부금	40,000
203-82-00639	대한적십자사	법정기부금	8,000
616-82-12520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법정기부금	20,000
인별합계금액			198,000

- 1. 세액공제대상금액: 근로자(사업소득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단,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대상금액 공제한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